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附錄)
運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1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의안 번호	707
----------	-----

제출년월일: 1999. 12.
 제출자: 홍기서의원의외 9인

1. 제정이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의정회의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안제2조)
- 나. 의정회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종로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안제3조)
- 다.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안제4조)
- 라. 의정회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첨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종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제5조)

3.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4. 예산반영 : 예산조치 필요

5. 조례(안)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종로구의회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종로구 사회복지 문제, 환경문제 연구
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종로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까지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